#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27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민홍철・임광현・정준호

이건태 • 백혜련 • 이재강

복기왕・김교흥・윤종군

한정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 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 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 해당 업무 수행의 명 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내용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153조제1항제2호).

####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8조의2(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보조) ① 경찰청장은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 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58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위험방지 등의 조 치의 보조 업무수행 시기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와 도착 전으로 한정한다.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 그 업무 보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보조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3조제1항제2호 중 "명령"을 "명령(제58조의2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조치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8조의2(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보조) ① 경찰청장은 제5
	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
	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
	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8조에 따
	른 한국도로공사가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 보조 업무수행 시
	기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
	는 경우와 도착 전으로 한정한
	<u>다.</u>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
	는 한국도로공사에 그 업무 보
	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u>야 한다.</u>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 조치 또는 <u>명령</u>에 따르지 아 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 해한 사람

3. ~ 7. (생 략) ②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
의 조치를 보조하는 한국도로
공사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u>으로 본다.</u>
∥153조(벌칙) ①
1. (현행과 같음)
2
<u>명령(제58</u> 조의2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보
조하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조치도 포함한다)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